

	교원양성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3. 1. 21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교무입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에 따라 교원자격검정 실시 및 교원양성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모든 학과에 적용된다.

제3조(구성) ① 교원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외부인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.

1. 「교육공무원법」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 하였거나 근무 중인 교육공무원(조교로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.)
2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
3.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②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되고, 위원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며, 간사는 교무입학처 담당자가 관련 사무를 담당 한다.
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보직에 의한 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교원양성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.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
- ②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실시
- ③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장(총장)이 별도로 정하는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결정 등

제5조(회의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반드시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회부 가능하다.

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6조(결과보고)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 그 밖에 교원양성위원회 조직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원양성기관의 장(총장)이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